

[붙임 2] 주요사업 세부평가표

붙임	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
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

○ 외부인력에 대한 차별금지

항목	지표		답변결과					비고	담당부서
	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	
외부 인력에 대한 차별 금지	1	기관은 외부 인력의 업무 계약과 관련하여 성별, 종교, 장애, 나이, 사회적 신분,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.	○						라디오제작부 TV제작부 방송기술부 방송인프라부 미디어사업부
	2	기관은 외부 인력의 업무 계약 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.	○						
	3	기관은 외부 인력으로 근로자를 요청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적 조건, 미혼 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.	○						
	4	기관은 외부 인력에 대해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.		○					
	5	기관은 외부 인력에 대해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기관 내에서의 업무와 관련		○					

	하여 제공되는 편의에 있어서 차별하 지 않는다.							
	소 계	3	2					
	합 계	3	2					

○ 방송인권 보호

항목	지표		답변결과					비고	담당부서
	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	
콘텐츠 내용상의 인권 보호 및 침해 방지	1	기관은 콘텐츠 내용상의 인권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해 콘텐츠 제작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.		○					라디오제작부 TV제작부 미디어사업부
	2	기관은 콘텐츠 내용상의 인권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.	○						
	3	기관은 콘텐츠 내용상의 인권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한 콘텐츠 제작 관련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.		○					
	소 계		1	2					
	합 계		1	2					

○ 재산권 보호

항목	지표		답변결과					비고	담당부서
	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	
콘텐츠 제작물의 저작 재산권 보호	1	기관은 제작 또는 콘텐츠 관리 업무 수행 인력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하고자 노력하며, 근로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.	○						라디오제작부 TV제작부 미디어사업부
	2	기관은 제작 또는 콘텐츠 관리 업무 수행 시, 사업 수행 인력의 저작권이나 지적재산의 소유권을 확인할 때는 보호되는 지적 재산권인지를 검토한다.		○					
	3	기관은 제작 또는 콘텐츠 관리 수행 시, 모든 지적 재산권의 소유자와 협상할 때는 설명을 한 후 동의를 얻으며,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.	○						
	소 계		2	1					
	합 계		2	1					

○ 사업고객 정보 보호

항목	지표		답변결과					비고	담당부서
	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	
사업 고객의 업무상 정보 보호	1	기관은 사업 고객과의 계약 시 상호 사업자의 업무상 정보를 보호하는 내 용을 서면으로 요구한다.	○						라디오제작부 TV제작부 방송기술부 방송인프라부 미디어사업부
	2	기관은 사업 고객과 상호 업무상 정 보가 누설되었을 경우, 시정을 요구하 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관계의 단 절을 고려한다.		○					
	소 계		1	1					
	합 계		1	1					

○ 시청자 및 청취자 인권 보호

항목	지표		답변결과					비고	담당부서
	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	
시청자 및 청취자 인권 보호	1	기관은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사전·사후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.	○						심의감사부
	2	기관은 외부기관에서 방송심의 관련 된 지적이 나올 경우 지체 없이 시정 하고 있다.		○					
	3	기관은 시청자 또는 청취자의 불만을 접수하고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개선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.	○						
	4	기관은 협찬고지에 대한 사전 심의를 통해 과도한 광고효과를 방지하기 위 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.		○					
	소 계		2	2					
	합 계		2	2					